

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6. 8.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지방분권, 각종 시책업무 추진 등에 의한 인력 보충의 필요에 따라 보정 정원의 범위내에서 인력을 증원코자 하며,
- 나.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강된 전산직인력 한시정원을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상시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지방공무원 총정원수 683명을 691명으로 하고 그 중 집행기관의 정원수 668명을 676명으로 하며(안 제2조)
- 나. 2000년 11월 10일 증원된 전산8급 1명 한시정원의 규정을 삭제하여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(조례 제500호 부칙제2항)

3. 관계법령

- 가.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
- 나.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4조
- 다. 표준정원제시행에 따른 시군구 정보화사업추진 한시정원 조정권고
(행정자치부 자치정보화담당관-1297, 2003. 10. 27)
- 라.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운용에 관한 보완지침
(부산광역시 기획관실-1543, 2004. 3. 5)

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본문중 “683명”을 “691명”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“668명”을 “676명”으로 한다.

조례 제500호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